

등록번호 : 20171516 www.crazyfry.co.kr

10

최초 등록일 : 2017. 12. 18.

최종 등록일 : 2025. 04. 15.

크레이지후라이(CrazyFry)

정 보 공 개 서

위키스마일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

위키스마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주소]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200번길 85(반경동)

[대표 전화번호] 1877-8484

[대표 팩스번호] 02-402-8480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관리팀 / 1877-8484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 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 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상호	영업표지	주 소				
	크레이지후라이(CrazyFry)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200번길 85(반경동					(반경동)
위키스마일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케기프막 =	개인사업자	2021. 9. 16.	남기우	1877-8484		02-402-8480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	록번호 7		734-71-00272

2.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크레이지후라이 (CrazyFry) 외 1개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200번길 85(반경동)		
대표이사 남기우	남기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남기우	1877-8484	02-402-8480

3.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다른 기업의				서울시 중구	
가맹사업	㈜지누코	지단분식	2022. 5. 1.	남대문로 117,	남기우
일부를 인수함				1154-1호	
다른 기업의				서울시 중구	
가맹사업	㈜지누코	크레이지후라이	2022. 5. 1.	남대문로 117,	남기우
일부를 인수함				1154-1호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크레이지후라이(CrazyFry)	
상 호	크레이지후라이(CrazyFry) OO점	



상표(서비스표)	3 to 1941	등록번호 : 4103292890000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Crazy Fry	등록번호 : 4103445460000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56,434		
2022년	310,596	122,904	187,692	599,418	18,904	16,059
2023년	308,794	534,527	-225,733	1,108,693	12,305	7,790

[※] 당사는 2022년 5월 주식회사 지누코로부터 가맹사업을 인수하였습니다.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5.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가맹사업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관련여부	관련여부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임원		2017. 12. 6 ~ 2022. 5. 1.	㈜지누코 대표이사	회사운영 총괄		
		남기우 대표이사	2021. 9. 16. ~ 현재	위키스마일 대표자	회사운영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	(명)	직원수(명)
시엄	상근	비상근	761(0)

[※] 재무상황은 별지 참조



2023년 12월 31일	1	0	0

8.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구분	상호/이름	사업명(정보공개서등록번호)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크레이지후라이 부 ㈜지누코		2017. 3. 13~ 2022.	펍전문점	
기정군구 (ਜ)/ 	サベートル	(20171516)	5. 1.		
기매보보 이키스마이		크레이지후라이	2022 도 1 성제	펍전문점	
가맹본부 위키 	위키스마일	(20171516)	2022. 5. 1~현재	답신군심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	상품분류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31-901-331	영업표지, 인테 리어 제품 등에 사용		43	4103292890000	남기우	2025. 8. 12
Crazy Fry	영업표지, 인테 리어 제품 등에 사용		43	4103445460000	남기우	2026. 1. 11
오징어튀김 제조 방법 및 그 제조 방법에 의해 제조된 오징어튀기	특허권	2015. 5. 26		1015246280000	(남기우	2034. 10. 24.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2022. 3. 22.자 주식회사 지누코에서 남기우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7. 3. 13.

- 직영점 오픈일[상표권자인 ㈜가치가패밀리로부터 상표의 사용 허락을 받아 직영점 오픈]

2. 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가치가패밀리	크레이지후라이(CrazyFry)	서정숙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218, 4층(신정동, 이화빌딩)
㈜지누코	크레이지후라이(CrazyFry)	양세진	2017. 2. 24. ~ 2017. 12. 5.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23길 10, 2층
㈜지누코	크레이지후라이(CrazyFry)	남기우	2017. 12. 6. ~ 2018. 3. 12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23길 10, 2층
㈜지누코	크레이지후라이(CrazyFry)	남기우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194, 래미안빌딩 2층
㈜지누코	크레이지후라이(CrazyFry)	남기우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94, 16층 1602호
㈜지누코	크레이지후라이(CrazyFry)	남기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3, 10층 1005호
㈜지누코	크레이지후라이(CrazyFry)	남기우	2021. 10. 01. ~ 2022. 5. 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17, 11층 1154-1호
위키스마일	크레이지후라이(CrazyFry)	남기우	2022. 5. 1. ~ 현재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200번길 85(반경동)

3. 크레이지후라이(CrazyFry) 업종

영업표지	업종				
크레이지후라이(CrazyFry)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크대에서추다에(ClazyFiy)	기타외식	오징어튀김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1. 12. 3	1	2	2022. 12. 31			023. 12. 3	1
시위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2	10	2	9	7	2	9	7	2
서울	12	10	2	9	7	2	8	6	2
부산	ı	-	-	-	-	-	i	-	-
대구	ı	-	-	-	-	-	i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경기	2	2	-	-	-	-	-	-	-
세종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1	1	0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3	0	3	0	0	10
2022	10	0	3	0	2	7
2023	7	1	0	1	0	7

6. (최근 3년 동안) 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상호/			영업	저ㅂ고게ㅂ	가맹점 및 직영점 수		
구분	이름	업종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12	2022.1	2023.12.
	이름 	# / 1	O 국 L 포	.31	2.31	31	
7L0H	위키						
가맹 본부	스마	분식점	지단분식	20201706	0/0	0/0	0/0
	일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크레이지후라이]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 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 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214 01		2023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말 기맹점 수	평균 매출액	면적당 평균매출액	상한	면적당 평균매출액	하한	면적당 평균매출액	비고
전체	7(1)	275,382	8,337	335,625	10,449	188,656	6,104	
서울	6	275,382	8,337	335,625	10,449	188,656	6,104	
부산								5곳 미만
대구								5곳 미만
인천								5곳 미만
광주								5곳 미만
대전								5곳 미만
울산								5곳 미만
세종								5곳 미만
경기								5곳 미만
강원								5곳 미만
충북								5곳 미만
충남	1(1)			해당사형	항 없음			5곳 미만
전북								5곳 미만
전남								5곳 미만



경북				5곳 미만
경남				5곳 미만
제주				5곳 미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하였습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의 데이터는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 을 추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에서 제외하였습 니다. 각 지역별 가맹점수의 ()는 6개월 미만 운영점포 숫자입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 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9. 크레이지후라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7	37.7개월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크페이지후라이]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 니다.

해당사항 없음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 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사	주소	전화번호
---------------------	----	------



국민은행	동아미디어 지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1599-9999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고
	매장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개	
국민은행	직접	인상품부)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	
계좌가	방문 시	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있는	인터넷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인터넷뱅	
사업자	뱅킹	킹(www.kbstar.com) 접속 → ③ 가맹금예치서비스 클	
	이용 시	릭 → ④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⑤ 가맹금예치	
국민	은행 계좌가	그미으해 게지게서 ㅎ 이이 저치시해	
없는	= 사업자	국민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본인이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계좌	개설 시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개설 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게 글 시 필요서류	대리인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I 콘파시ㅠ	개설 시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귀하는 또한 예치기관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최근 3년 동안) 당사와 임원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 관련) 당사와 임원의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 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최근 3년 동안) 당사와 임원의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아래의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보증금 가맹본부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8,800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오픈에 소요된 실 제비용(가입비, 상권분석, 시스템 제공, 오픈 지원 등 에 사용)	소모성 비용
교육비	2,200		교육 시작 1일 이 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총계	11,000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 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5,000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미수금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구분	금액(A형)	비고
최초 가맹비	8,800	부가세 포함
교육비	2,200	
보증금	5,000	부가세 없음
합계	16,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기준: 25평(82.64㎡)]

 총계		83,600					
싸인물	가맹본부	8,800				실측 후 협의 결정	
홍보 및 광고 / DP용품	가맹본부	3,300		시작 후 (1)일 까지 발주 전 잔금 : 개설(3) 계약취소 일 전까지			LED간판, POP 등
주방집기	가맹본부	7,700			발주 전	주방/홀 집기	
주방기기	가맹본부	14,300		체약과 동시 중도 금: 공사		튀김기 1대, 가스렌지 등	
인테리어 (점포공사)	가맹본부	49,500	1,980	계약금 : 계약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3.3m ² 늘어날 때마다 1,980 추가부담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매장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별도비용: 의탁자, 철거, 닥트공사, 샷시공사, 가스공사, 전기승압, 냉난방, 점포외부 및 기둥공사, 조명기구, 음향시설, 정수기, 포스 및 카메라, 순간온수기, 포장용기 및 기기일정 등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할 경우 당사의 관리감독의 대가로 3.3m² 기준으로 220천원을 인테리어 공사 전에 당사에 추가 지



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희망자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또는	→ 가맹희망자에게 권유 → 가맹점사업자 선장
가맹점사업자	※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 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경기도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 담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8.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 165	익월 5일전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 업자측이 배분 하여 분담	통지 후 7일	미 시행 시 반환	시행	V.8. 광고 및 판 촉 활동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미 시행 시 반환	시행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연22	교육 실시 10일 이전	미 시행 시 반환	시행	교육 필요 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20]%	지급기일 익일부터	후불로 반환없음		
POS 사용료	지정업체	사용금에 따라				



※ 당사의 광고분담금이나 교육훈련비는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사전통지를 하고 실비 수준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운영관리	당 가맹사업의 기준에 따른 점포운영 관리여부를 조사 실시	수시	문의: 가맹관리팀
재고관리	실 제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수시	문의: 가맹관리팀
회계처리	가맹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수시	문의: 가맹관리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당사는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시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계약서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호 .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	
여 영업지역 내에서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당 가맹사업과 동일 또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ᅰᄼᅎ
등 영업관련 자산과 매뉴얼 및 운영양식,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중	제36조
요한 문서 등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	
에 대하여 지체 일(日) 당 일금 일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	
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철거 . 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 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경기도

_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 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경기도

_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크레이지후라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크레이지후라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크레이지후라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ㆍ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 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판매상품리스트]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시정 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1회 위반: 구두 경고	



다르 기매저시어지 드	♥병처(고그사프리스트)	기재된 제품은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소비자 외 제3자	※별첨[공급상품리스트] 참조	판매할 수 없음	시정요구 및 미시정
_ 1 1 -1 113 1	<u> </u>		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 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판매상품리스트] 참조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 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펍전문점	크레이지후라이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 도)로 500m을 원칙

[영업지역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매장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일 것)와 역사(기차, 지하철)의 시설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별첨이 없을 경우 계약서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		
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	사 담당팀 검토 → 영업	으로 통지하고 30일 이
동되는 경우	지역 변경(안) 작성 →	내에 동의 여부 회신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통지 → 가맹점사업자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크레이지후라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 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88% 12%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 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	
까?	①+15일 이내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B, 아니오→®	D-10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관련 계약조문 제34조



-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 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 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관련 계약조문 제35조 제1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원 . 부재료, 교육비, 가맹비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3.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4. 가맹본부의 산가기준 등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5.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및 재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6.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자위치변경을 한 경우
- 7. 영업상 비밀공개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 위반을 한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 및 시설의 교체 . 개량 . 보수 요청에 따르 지 않는 경우
- 11.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 . 부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 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 12.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 1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 14. 가맹점사업자가 품질관리기준 위반 및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여 재교육 후 동일사유가 발생된 경우
- 1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



를 취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합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5조 제2항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 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 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 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당사자 모두의 서 면 합의 의하여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 없음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동의 여부 회신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관리팀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최초가맹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양도 등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업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영업양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하여야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구분 가능 여	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	-------------	----	---------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모든 권리의무	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	교육수료 및
0 7	시	포는 선디의구	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	교육비 지급
			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지정한 범위	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네니하자	가능	내의 권리의무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	
		네의 선디의구	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업무위탁	불가능	-		

[※]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크레이지후라이(CrazyFry)]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펍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오후 5:00 ~ 익일 2:00	월 26일(2월은 24일) 이상 영업일 준수	문의: 가맹관리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이상	2명 이사 지저 그모		점주의 부재 시
28 VIS	직접 근무	직계가족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점포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점포운영상태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각 지역 가맹관리팀	통상 QSC 관리
회계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자료 요청 → 회계자료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각 지역 가맹관리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브	구분 광고 성격	부	-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一下正	97 94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正日 글시	217.	
			광고비 50% 중	광고 계획 공고 →	대중매체
광고	니레드 미 사프라그	광고비의	가맹점 총	가맹점의 광고참여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50%	매출액에 따라	→ 가맹점부담액	명절, Day
			분담	제시 → 광고 →	이벤트



			광고비 50% 중	사후결과 공고	행사
	브랜드 및	광고비의	가맹점 총		(전국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50%	매출액에 따라		행사)
			분담		
	가맹점	전액 부담	없음		
	모집광고	27 TO	ᆹᆷ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판촉비의 50%	판촉비의 50% 중 가맹점 총 매출액에 따라 분담	 판촉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광고 → 사후결과 공고 	월별 판촉 행사
기타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상동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상기 분단절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	관련 계약조문
④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광고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제23조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판촉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사전에	제24조
협의하여야 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7조



-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 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내용	관련 계약조문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양 당사자 중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	
의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 일방적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	
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	
급하여야 한다. 단, 각 조항에 위약금이 있을 경우 그 조항이 본 조항의 위약금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개설로	
부터 해지일까지의 매출액을 월 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가맹점사업자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X 2% X 10개월(단, 10개월 미만 잔	
여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함)	
② 아래 내용으로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전항	
과 별도로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 경업금지 의무 위반 시 금 일천만원	제39조
(₩10,000,000) 위약금 지급	
2. 가맹점사업자가 상표무단 사용 시 위반일수 X 금 일십만원(₩100,000) 위약금	
지급	
3. 가맹점사업자가 자점매입, 소스 등 자체가공 등 상품품질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 시 금 일천만원(W 10,000,000) 위약금 지급	
③ 기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에 대하	
여 본 계약서 상의 구제수단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	
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가맹점현황문서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계약체결 14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계약 1일 전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계약체결 당일	11페이지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3일	12페이지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약 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약 21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 가맹사업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0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 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유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담	ㅇ간판교체 비용
비용항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비용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



	할지급 가능)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
	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제외사유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
	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 인력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		
		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상품, 설비(집기),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판매촉진, 고객관리,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위생관리, 교육훈련,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	가맹본부	문의:
요청 시	회계 등 가맹점	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	부담	가맹관리팀
	운영 전반에 대한	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상품, 설비(집기),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가맹점	문의:



요청 시	판매촉진, 고객관리,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부담	가맹관리팀
	위생관리, 교육훈련,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가맹금에	
	회계 등 가맹점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	포함된	
	운영 전반에 대한	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	통상의	
	경영지도	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경영지도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	비용을	
		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초과한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부분에 한함)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음

8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점포운영, 기기사용법, 발주 및 입금 방법 등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전까지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신상품, 서비스 강화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통지 후 7일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재 교육	품질관리기준에 미달될 경우 또는 고객의 클레임이 [2]회	집단 강의 위탁교육	통지 후 7일내	



이상 발생할 경우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7일	2,200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년 2일	220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재 교육	미정	미정	가맹점 부담

[※] 수시교육과 재교육은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 시 실비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사전통지 하며, 교통비, 숙식비는 개별 부담임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 훈련을 불참할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5조 (계약의 해지)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계약의 갱신과 거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	제13조 (개시 승인)
우 개업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제13포 (제시 6년)



9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No.	지역	매장명	주소
1	서울	안녕인사 동 점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55-2 2층
2	서울	센터원점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 지하1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3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239,757	POS 매출액을 근거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 사 OO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 관실(044-200-4239~4)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주방기기/집기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 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_

[별첨] 공급상품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 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_



[별첨] 판매상품 리스트

분류	상품명	권장가격	비고
	즉석떡볶이	사전고지	
	짜장떡볶이	и	
떡볶이	김치찜떡볶이	"	
	차돌박이떡볶이	"	
	해물떡볶이	п	
	황제김말이	"	
	BBQ삼겹	II .	
	스펨&비엔나	II .	
	찹쌀탕수육	II .	
메인토핑	킹소세지	ıı .	
	어묵	ıı .	
	순대	ıı .	
	치킨가라아게	ıı .	
	라면	ıı .	
	볶음밥	u u	
서브토핑	치즈	ıı .	
	만두	u u	
	계란	u u	
	크림생맥주	u u	
	청포도 크림생맥주	u u	
	참이슬	ıı .	
	참이슬 오리지널	ıı .	
	처음처럼	ıı .	
주류/음료	이슬톡톡	11	
	카스(병)	ıı .	
	콜라	"	
	사이다	u u	
	환타	ıı .	
	웰치스	ıı .	



[별첨] 202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 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경기도

-

[별첨] 2022 표준재무상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 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_

[별첨] 2022 표준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 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_



[별첨] 2023 표준재무상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 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_

[별첨] 2023 표준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 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경기도

_



[별첨] 예치신청서

[서식] (앞 쪽)

			처리기간
		가맹금예치신청서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71.00	상호명(영업표지)		
가맹 본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의 계좌		
가맹본	부의 계좌		
「가맹사	·업거래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	니행령 제5조
의7제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또는 인)
		예계	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